

가격신고 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실무 가이드라인**



가. 제도 설명 :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① 과세자료 제출 대상 업체

- 전년도(1.1~12.31) 관세청 납부세액*(관세, 부가세 등) 합산 5억 이상 수입업체

* 세액 조회 : 유니패스 > 정보조회 > 자사실적 > 수출수입환급납세실적 > 제세납부실적

※ 납부세액 실적이 집계되는 매년 1.1~1.31일에는 전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적용

- 납세협력 프로그램 참여 업체*(AEO·ACVA)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

* AEO: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ACVA: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 ACVA 업체의 경우, 사전 결정받은 물품에 한정하여 과세자료 제출 대상 제외

② 제출 대상 과세자료

- 수입 거래 형태별 과세자료 제출 대상 8개 분야* 규정

* ① 권리사용료, ② 생산지원, ③ 수수료·중개료, ④ 운임·보험료·기타 운송관련 비용,
⑤ 용기·포장비용, ⑥ 사후귀속이익, ⑦ 간접지급금액, ⑧ 특수관계자 거래

- 동일 판매자로부터 같은 조건(동일 조건)으로 반복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매년 최초 수입 시 1회만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신고건은 생략

* 과세자료가 제출된 최초 수입신고번호를 가격신고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제출 같음

- 업체의 과세자료 준비에 따른 통관 지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과세자료 사후 제출도 허용 (수입신고 시 지연제출 사유서 제출 후 30일내 제출, 연장불가)

- 과세자료 제출 대상(8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격신고서와 함께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 제출(계약서 및 송품장 제출 불필요)

③ 과세자료 미제출 업체 관리

- 미제출 업체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요청에도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① 월별납부 업체 승인 취소, ② 담보제공 생략 중지, ③ 관세조사 또는 세액심사 등과 같은 납세 제재 적용 예정

나. 제도 시행 근거

- 관세법(이하 ‘법’) 제27조(가격신고) 제2항 및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관세법 시행령 제15조 등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및 별표 제8호, 별지 제38호 서식 등
-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3장

2 공통 검토 사항 : 가격신고 - 과세자료 일치성 확인 등

가. 신고 내용의 정합성 확인

- 수입·가격신고 내용이 상호 간 정합성을 갖는지 확인 필요
- 아래와 같은 대표적인 오류 사례를 신고서 제출 전 점검
 - <오류 사례①>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가격신고 상세 내용에 B.가산금액을 기재하는 경우
➡ B. 가산금액에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며(3. 8개 분야 별 자료 제출 가이드라인 참조) ‘미제출 사유서’는 제출 불가
 - <오류 사례②> 자료제출 8개 분야에 대한 과세자료 없이 계약서 또는 송품장만 제출하는 경우
➡ 8개 분야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계약서 및 송품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이 ‘미제출 사유서’만 제출, 8개 분야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과세자료와 계약서 및 송품장 제출 필요
 - <오류 사례③>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신고하면서 ‘가격신고서 서식 A’ 사용
➡ 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만 A 서식으로 신고(포괄가격신고의 경우 C 서식),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B 서식으로 신고(포괄 가격신고의 경우 D 서식)
 - <오류 사례④> 수입신고서 상 ‘인도조건’을 FOB로 기재하였으나, 가격신고서에 운임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 인도조건을 EXW 또는 FOB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 운임(보험료 등)을 가산금액으로 신고 하고 해당 자료 제출 필요(반대로 CIF나 DDP 조건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금액이 없다면 운임 관련 자료 제출 불필요)

나. 가산 요소 신고 시 유의점

- 가격신고 상세 내용에 기재하는 내용과 제출하는 과세자료(첨부서류부호)가 상호 정합성을 가져야 함

가격신고 서식 A 기준

가격신고 상세 내용

※ 신고당시의 원화로 환산하되, 수입신고서가 2란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된 총 금액으로 기재

제1방법 적용	A. 산출근거	12. (a) 송품장 화폐 단위로 표시된 거래가격(관세평가 목적상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 (환율 :)	
		(b) 직접·간접지급금액, 할인(조건, 사정해당), 채무상계, 변제금액 등(원화)	⑦ 간접지급금액
		13. 국내화폐로 환산한 총액(A)	
	B. 가산금액	14. 구매자 부담비용 (a)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커미션)	③ 수수료·중개료
		(b) 중개료	③ 수수료·중개료
		(c) 용기 및 포장비용	⑤ 용기·포장비용
		15. 무료 또는 인화된 가격으로 구매자에 의해 제공된 재화와 용역으로서 수입물품의 제조와 수출에 사용된 :	② 생산지원
		(a) 수입물품에 결합된 재료 또는 구성요소	
		(b)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다이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② 생산지원
		(c)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비료, 촉매 등)	② 생산지원
		(d) 외국에서 수행된 것으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및 디자인, 스케치	② 생산지원
		16.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① 권리사용료
		17.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수입후의 전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⑥ 사후귀속이익
		18. 수입항까지의 운송비용(소계)	④ 운임 등
		(a) 운임, 왕복운임	④ 운임 등
		(b) 적하, 양하, 환적비용, 기타 운송관련비용 등	④ 운임 등
		(c) 보험료	④ 운임 등
		19. 가산비용 총액	

No	첨부서류부호	파일명
xx	송품장·구매계약서	250901 계약서 및 송품장.pdf
xx	① 권리사용료	250901 권리사용료.pdf
xx	② 생산지원	250901 생산지원비용.pdf
xx	③ 수수료·중개료	250901 수수료·중개료.pdf
xx	④ 운임·보험료·기타 운송관련 비용	250901 운송비용.pdf
xx	⑤ 용기·포장비용	250901 포장비용.pdf

No	첨부서류부호	파일명	
xx	⑥ 사후귀속이익	250901 사후귀속이익.pdf	
xx	⑦ 간접지급금액	250901 간접지급금액.pdf	
xx	⑧ 특수관계자 거래	250901 거래가격 결정 설명자료.pdf	3
xx	미제출 사유서	250901 미제출 사유서_xxx업체	4
xx	지연제출 사유서	250901 지연제출 사유서_xxx업체	

- 1 과세자료 제출 대상 8개 분야의 ‘가격신고 상세 내용’상 위치 확인 및 자료 제출 시 ‘첨부 서류부호’를 신고 내용과 부합하는 것으로 선택

※ ex) 용기·포장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가격신고 상세 내용’ 상 B.14(c)에 해당 금액을 기입 하여야 하며 해당 과세자료는 ‘첨부서류부호’를 ‘⑤ 용기·포장비용’으로 선택하여 제출

- 2 수출자와의 채무상계금액을 가격신고서에 반영하려고 하는 경우 ‘가격신고 상세 내용’ A.12.(b)에 금액 기재 후 ‘⑦ 간접지급금액’으로 ‘첨부서류부호’를 선택하여 자료 제출
- 3 가격신고서 A서식 8.(a) [특수관계 해당여부]에 ‘예’를 선택한 경우, ‘⑧ 특수관계자 거래’로 ‘첨부서류부호’를 선택하여 자료 제출

※ (특수관계의 범위)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4 ‘미제출/지연제출 사유서’는 가격신고서와 함께 전자제출이 원칙이나 가격신고 시 이를 누락한 경우 첨부서류 사후 제출 가능

다. 기타 확인사항

- 과세자료는 수입신고 시 해당 가격신고서에 첨부서류로 제출
 - (제출 경로) 유니패스 > 전자신고 > 첨부서류 사후제출 > 가격신고서에 제출
- 연중(1.1~12.31) 동일 판매자로부터 같은 조건*으로 수입하여 동일 과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가격신고서 7번’에 과세자료가 첨부된 최초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제출 같음
 - ‘미제출 사유서’도 동일 판매자로부터 같은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수입신고서에 제출 후 ‘가격신고서 7번’에 기재
- * 같은 조건 : 같은 판매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품목이 다르더라도 계약서 또는 내역서 등 동일한 과세자료에 의해 과세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간주
 - 연중 계약 내용 또는 판매자 변경 시, 변경된 과세자료 다시 제출
- 과세자료는 사업자번호 단위로 제출해야 하므로, 본사와 개별사업장으로 구성된 법인의 경우 개별사업장 단위로 제출 필요
- PDF 혹은 이미지 파일 등의 자료는 출력했을 시 육안으로 내용 확인이 가능한 정도의 화질로 제출

- 모든 자료는 국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언어로 작성된 자료의 경우 세관 판단에 따라 국문 번역본 요청 가능
- 모든 제출 자료는 발췌본이 아닌 전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 없는 부분 등은 비식별화 처리하여 제출 가능. 자료가 지나치게 방대한 등의 사유로 발췌하여 제출하는 경우 추후 세관 판단에 따라 보완 요청 가능
- ‘수입물품 구매계약서’가 없는 경우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공급확약서(Offer Sheet) 등 무역거래 내역이 확인되는 다른 형식의 문서 제출 가능

라. 상담창구 : 관할 세관으로 문의

구분	연락처
서울세관 심사정보과	☎ 02-510-1320
부산세관 심사정보과	☎ 051-620-6379, 6385
인천세관 심사정보과	☎ 032-452-3569, 3696, 3323
인천공항세관 심사정보과	☎ 032-722-4378, 4350
대구세관 납세지원과	☎ 053-230-5315
광주세관 심사과	☎ 062-975-8172
평택세관 심사과	☎ 031-8054-7184



QR코드 스캔 ➡ PDF 다운

3 8개 분야별 자료 제출 가이드라인

가. ① 권리사용료

- ▶ 권리사용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

- 제출 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① 권리사용료의 종류, ② 지급자 및 수익자(제3자 등), ③ 지급금액 또는 산정 비율

우수 사례 가격신고서 상세 내용과 과세자료가 일치(설명 포함)

● 가격신고서 상세 내용 중 권리사용료 해당 내역

B. 가산금액	16.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5,070,550
---------	---	-----------

- 16. 산출 : $101,411,000 \times 0.05 = 5,070,550(\text{원})$

※ 권리사용료 최종 금액은 일반적으로 수입 후 확정되므로 관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잠정 가격신고가 가능하며, 잠정가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신고 시 10번 항목 작성 필요 (가격신고서 A서식 기준)

● 가격신고 시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권리사용료)

- 지급 구조가 포함된 계약서 및 국문 설명자료 제출

<상표권 계약서>

B와 S는 다음과 같이 A상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를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 중간 생략 ---

제6조(산정 방법 및 가격)

라이선스 사용료는 제조 및 판매된 상품에 대한 제3자 순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한다.

라이선스 사용료는 각 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 있다.

- A. 상표 라이선스 및 서비스 사용료 : 모든 상품의 제3자 순 매출액의 5%
- B. 제품 라이선스 사용료 : 모든 상품의 제3자 순 매출액의 1.5%

--- 이하 생략 ---

물품(ITEM)	수량	개당 순매출액(원)	총 순매출액(원)	로열티(원)
0000	1,000	101,411	101,411,000	5,070,550

※ 총 3건의 수입신고에 안분하여 신고하면서, 최초 신고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신고건은 최초 수입신고 번호를 가격신고서에 기재(7번 항목)

※ 로열티 지급은 하고 있으나 수입물품과 관련되지 않아 가격신고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38호 서식] 미제출 사유서 ‘⑤미제출 사유’의 ②번 선택 후 사유 작성하여 제출

미흡 사례 1 권리사용료와 관련 없는 자료 제출

- 가격신고서 상세 내용에 권리사용료 관련 내용을 신고하지 않음 → 미작성

B. 가산금액	16.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	--

- 가격신고 시 미제출 사유서 제출

- 권리사용료에 대한 신고는 하지 않으며, 첨부서류부호를 ‘① 권리사용료’로 선택하고 실제 내용은 미제출 사유서 제출

미흡 사례 2 권리사용료 종류 및 지급자(수익자) 없이 금액만 제출

- 가격신고서 상세 내용에 권리사용료 관련 내용 신고

B. 가산금액	16.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99,960,000
---------	---	------------

- 가격신고 시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권리사용료)

- 어떤 권리에 대한 사용료를 누가 누구에게 지급했다는 설명 없이 지급 금액만 제출

IP	품명	CODE	DESCRIPTION	QTY	통화	단가	로열티
-	AAA	-	BBB-C-DD123	100	USD	680	68,000

나. ② 생산지원

- 생산지원 :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판매와 관련하여, 무료 또는 인화된 가격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아래의 물품 및 용역의 가격

-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구성요소, 부분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다이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수입물품 생산에 소비되는 물품
- 수입국 외의 곳에서 수행된 것으로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개발, 공예, 디자인, 설계, 고안, 용역

- 제출 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① 생산지원 지급(수익) 거래관계 확인 자료와 ② 품목, ③ 수량, ④ 단가

● 가격신고서 상세 내용에 생산지원 내용 신고

B. 가산금액	16.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자에 의해 제공된 재화와 용역으로서 수입 물품의 제조와 수출에 사용된 : (a) 수입물품에 결합된 재료 또는 구성요소	32,340,000
	(b)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다이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c)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비료, 촉매 등)	
	(d) 외국에서 수행된 것으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및 디자인, 스케치	

● 가격신고 시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생산지원)

제조위탁계약서

B와 S는 다음과 같이 00 제조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를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기본사실의 확인)

1. B는 S에 대하여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S는 B가 요청한 제품을 사양에 준해 제조하여 B에게 납품하기로 하며, 본 계약서에 그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 중간 생략 ---

제6조(원부자재의 공급)

1. B는 제품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00 및 사급자재(이하 “공급품”)를 물품명세서 및 포장 내역서와 같이 S에게 공급한다.
2. 공급품은 B가 B의 책임 및 운송비용 부담으로 인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B는 사전에 동 운송에 관한 정보를 S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이하 생략 ---

<별지> 공급품 List

품목	모델명	단가(미화)	수량	금액(미화)
A	aaa-123	0.5	10,000	5,000
B	bbb-234	0.4	20,000	8,000
C	ccc-345	0.3	30,000	9,000

● 가격신고서 상세 내용에 생산지원 내용 신고

B. 가산금액	15. 무료 또는 인화된 가격으로 구매자에 의해 제공된 재화와 용역으로서 수입 물품의 제조와 수출에 사용된 : (a) 수입물품에 결합된 재료 또는 구성요소	
	(b)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다이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c)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비료, 촉매 등)	10,000,000
	(d) 외국에서 수행된 것으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및 디자인, 스케치	

● 가격신고 시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생산지원)

- 생산지원 물품, 수량, 단가에 대한 설명 없이 생산지원한다는 내용만 기재하여 제출

제목 : 생산지원비 가산대상 수입물품 거래가격 설명자료

1. 수입거래구조

당사는 S사로부터 하기와 같은 물품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물품	명세	사양
11111	알루미늄	5F
22222	철강	6F

당사는 해당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A사에 00를 주문하여 S사에 무상공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00의 비용과 해당 00의 생산에 드는 원자재를 무상 공급하므로 해당 금액을 가산하고자 합니다.

다. ③ 수수료·중개료

- 수수료·중개료 : 판매계약에 참여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해당 수입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수수료) 및 판매자와 구매자를 위하여 거래알선 및 중개 역할의 대가로 판매자 및 구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중개료)

- 제출 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① 지급자 및 수익자(제3자 등), ② 지급 종류, ③ 지급 금액 또는 적용 비율(정확한 금액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금액 산출에 필요한 설명 포함 필요)

우수 사례 가격신고서 상세 내용과 과세자료가 일치, 거래관계 명확

● 가격신고서 상세 내용 중 수수료 및 중개료 해당 내역

B. 가산금액	14. 구매자 부담비용 (a)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커미션)	
	(b) 중개료	3,200,000

● 가격신고 시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중개료)

정보이용료 INVOICE			
공급자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 aaa-aa-aaaaa		등록번호 : eee-ee-eeeee	
상호 : bbbbbb		상호 : <u>수입자</u>	
주소 : cccccccc		주소 : fffffff	
전화번호 : ddd-ddd-dddd		전화번호 : ggg-ggg-gggg	
--- 중간 생략 ---			
아래와 같이 정보이용료를 청구합니다.			
상세내역	순증량	이용료	
계약번호 : hhhhhhhh		3,200,000원	
브랜드 : iiiiii			
품목 : jjjjjjjj			
합계		3,200,000원	

미흡 사례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 산출에 대한 설명 누락

● 가격신고서 상세 내용 중 수수료 및 중개료 해당 내역

B. 가산금액	14. 구매자 부담비용	120,000,000
	(a)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커미션)	
	(b) 중개료	

- 매매 위탁 계약에 대한 변경 합의서만 제출되어 매매 품목별 수수료율은 확인 가능하나, 가산 요소로 신고된 120,000,000원에 대한 산출 방법 확인 불가능

라. ④ 운임·보험료·기타 운송관련 비용

- 운임·보험료·기타 운송관련 비용 :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 되는 비용

- 제출 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① 비용의 종류, ② 지급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

우수 사례 1 가격신고서 상세 내용과 과세자료가 일치(설명 포함)

● 가격신고서 상세 내용 중 운송비용 해당 내역

B. 가산금액	18. 수입항까지의 운송비용(소계)	26,428
	(a) 운임, 왕복운임	21,428
	(b) 적하, 양하, 환적비용, 기타 운송관련비용 등	
	(c) 보험료	5,000

● 가격신고 시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운송비용)

- 운송비용의 종류, 지급 금액이 포함된 인보이스를 제출하고 각 항목을 별도로 신고

청구 내역	금액(원)
항공 화물 핸들링료	21,428
보험료	5,000

※ 운임 등의 경우 동일 판매자로부터 같은 조건으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운임 항목 (BAF, CAF 등), 운임 조건(FOB, EXW 등), 선사(포워더 포함)의 변동과 관계 없이 해외거래처 (무역거래처)별 연 최초 1회만 제출

우수 사례 2 탁송품(특송물품) 과세운임표 적용 수입물품의 과세자료 제출

● 가격신고서 상세 내용 중 운송비용 해당 내역

B. 가산금액	18. 수입항까지의 운송비용(소계)	70,200
	(a) 운임, 왕복운임	70,200
	(b) 적하, 양하, 환적비용, 기타 운송관련비용 등	
	(c) 보험료	

● 가격신고 시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운송비용)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제1호의 탁송품 과세운임표를 활용하여 제출

중량 (KG)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네 시아	일본	말레이 시아
1.0까지	34,800	39,200	37,800	21,000	35,400	37,800	21,000	25,200	21,000	21,000
--- 중간 생략 ---										
10.0〃	141,600	201,600	126,600	70,200	117,000	126,600	64,800	70,200	72,000	82,200
--- 이하 생략 ---										

미흡 사례 1 가격신고서 상세 내용에 작성하였으나 과세자료 미비

● 가격신고서 상세 내용 중 운송비용 해당 내역

B. 가산금액	18. 수입항까지의 운송비용(소계)	1,220,000
	(a) 운임, 왕복운임	1,100,000
	(b) 적하, 양하, 환적비용, 기타 운송관련비용 등	
	(c) 보험료	120,000

● 가격신고 시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운송비용)

- 운송비용 각 항목을 별도로 신고했으나, 제출된 자료에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비용 산출 근거 파악이 어려움

미흡 사례 2 가격신고서 상세 내용에 미작성하고 과세자료 미비

● 가격신고서 상세 내용 중 운송비용(소계)만 작성

B. 가산금액	18. 수입항까지의 운송비용(소계)	1,532,000
	(a) 운임, 왕복운임	
	(b) 적하, 양하, 환적비용, 기타 운송관련비용 등	
	(c) 보험료	

● 가격신고 시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운송비용)

- 제출된 자료상 (a), (b), (c) 중 두 항목 이상에 해당되나, 모든 금액을 18.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과세자료도 비용 산출 근거를 파악하기 어려움

마. ⑤ 용기·포장비용

➤ 용기·포장비용 :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부담하는 다음의 금액

- i) 관세목적상 해당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 비용
- ii)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 자재비

- 제출 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① 지급자 및 수익자(제3자 등), ② 지급 종류, ③ 지급 금액 또는 적용 비율(정확한 금액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금액 산출에 필요한 설명 포함 필요)

우수 사례 가격신고서 상세 내용과 과세자료가 일치, 거래관계 명확

● 가격신고서 상세 내용 중 용기 및 포장비용 해당 내역

B. 가산금액	14. (c) 용기 및 포장 비용	1,000,000
---------	--------------------	-----------

● 가격신고서 상세 내용 중 용기 및 포장비용 해당 내역

INVOICE				
공급자	업체명 : aaaa			
	사업자 번호 : bbb-bb-bbbbbb			
	주소 : cccccc			
수입자	업체명 : <u>수입자</u>			
	사업자 번호 : ddd-dd-ddddd			
	주소 : eeeeeee			
상품 번호	상세 내역	단위	금액	총액
--- 중간 생략 ---				
ffffff	추가 포장비용	EA	1,000,000	1,000,000
--- 이하 생략 ---				

미흡 사례 가산요소 신고 누락 및 금액 산출에 대한 설명 누락

● 가격신고서 상세 내용 중 용기 및 포장비용 해당 내역 → 미작성

B. 가산금액	14. (c) 용기 및 포장 비용	
---------	--------------------	--

● 업체 사이의 포장비용 산정에 대한 협의 메일을 첨부하였으나 가격신고서 상 가산 요소 신고 누락, 협의 메일에서 적용 비율은 확인 가능하지만 구체적 금액 산정 방식 확인 불가능

바. ⑥ 사후귀속이익

- ▶ 사후귀속이익 : 수입물품의 수입 후 전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 중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 제출 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① 판매자에 귀속되는 수익금 산출 공식 및 ② 각 항목에 대한 상세 설명

우수 사례 사후귀속이익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제출

- 가격신고서 상세 내용에 사후귀속이익 내용 신고

B. 가산금액	17.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수입후의 전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147,000,000
---------	---	-------------

※ 사후귀속이익 최종 금액은 일반적으로 수입 후 확정되므로 관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하며, 잠정가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신고 시 10번 항목 신고필요 (가격신고서 A서식 기준)

- 가격신고 시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사후귀속이익)

공급 및 유통 계약서

000 물품에 대한 공급 및 유통 계약(이하 “계약”)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이하 “유효 기한”) 중, 00국에 소재한 S사와 대한민국에 소재한 B사와의 계약이다.

--- 중간 생략 ---

제7조 물품의 가격과 지급

- (1) 00 물품의 공급 가격은 아래 공식에 따라 계산된다.
00 물품의 가격 = USD \$10 x (기준약가/1,000원)
- (2) 상기 물품의 대금 중 일부는 2025년 6월 USD \$100,000을 지급하며, (1)와 같이 산출된 금액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 (3) 기준약가 시스템이 예기치 않게 변한다면, 양 당사자는 원재료 공급가격의 합리적인 변화에 대해 우호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 이하 생략 ---

● 가격신고서 상세 내용에 사후귀속이익 내역 신고

B. 가산금액	17.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수입후의 전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2,100,000
---------	---	-----------

● 가격신고 시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사후귀속이익)

- 사후귀속에 대한 설명 없이 수입물품에 대한 견적서 제출

견적서

날짜 : 2025.11.01.
수신 : B사 000 귀하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등록번호	000-00-00000		
상 호	S사	성 명	000
사업장 주소	000 000 000 0000번길 00-0		
업 태	명	종 목	명
전화번호	000-0000-0000		

합계금액						(4,752,000원)	
(공급가액+세액)							
No.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1	a	kg	100	200	20,000	2,000	
2	b	kg	1,000	300	300,000	30,000	
3	c	kg	10,000	400	4,000,000	400,000	
합계					4,320,000	432,000	

사. ⑦ 간접지급금액

- ▶ 간접지급금액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에게 실제 지급하는 금액

- 제출 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간접지급금 ① 지급자 및 수익자(제3자 등), ② 대가의 종류, ③ 지급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

우수 사례 가격신고서 상세 내용과 과세자료가 일치(설명 포함)

● 가격신고서 상세 내용 중 간접지급금액 해당 내역

A. 산출근거	12. (a) 송품장 화폐 단위로 표시된 거래가격(관세평가목적상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 (환율 : 1401.38 (USD))	75,000
	(b) 직접·간접지급금액, 할인(조건, 사정해당), 채무상계, 변제금액 등(원화)	21,020,700
	13. 국내화폐로 환산한 총액(A)	126,124,200

※ 12. (b) 산출 : $15,000 \times 1401.38 = 21,020,700(\text{원})$

13. 국내화폐로 환산한 총액(A) : $75,000 \times 1401.38 + 21,020,700 = 126,124,200(\text{원})$

● 가격신고 시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간접지급금액)

- 수출자와의 메일 및 간접지급금액(할인)에 대한 산정 내역서(설명 포함) 제출

BL	PO	물품 (ITEM)	원가 (USD)	할인가 (USD)	수량	간접지급금액 (USD)
FRU12356984	7512358965	0000	30,000	5,000	3	15,000

미흡 사례 1 가격신고서 상세 내용에 작성하였으나 과세자료 미비

● 가격신고서 상세 내용 중 간접지급금액 해당 내역 신고

A. 산출근거	12. (a) 송품장 화폐 단위로 표시된 거래가격(관세평가목적상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 (환율 : 1401.38 (USD))	23,000
	(b) 직접·간접지급금액, 할인(조건, 사정해당), 채무상계, 변제금액 등(원화)	11,050,200
	13. 국내화폐로 환산한 총액(A)	43,281,940

● 가격신고 시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간접지급금액)

- 계약서 내용 중 간접지급금액 관련 해당 내용만 제출하고 산정 근거에 대한 설명 부족

미흡 사례 2 가격신고서 상세 내용에 미작성하고 과세자료 미비

● 가격신고서 상세 내용 중 간접지급금액 해당 내역 → 미작성

A. 산출근거	12. (a) 송품장 화폐 단위로 표시된 거래가격(관세평가목적상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 (환율 : 1401.38 (USD))	30,885
	(b) 직접·간접지급금액, 할인(조건, 사정해당), 채무상계, 변제금액 등(원화)	
	13. 국내화폐로 환산한 총액(A)	43,281,621

● 가격신고 시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간접지급금액)

- 하자보증금액을 12. (b)에 작성하지 않고 모든 금액을 12. (a) 포함하여 작성하고 제출된 과세자료를 통해 적용 비율은 확인되나, 구체적인 산출 방법 확인 불가

수입신고번호	물품명	가격 (USD)	단위비율	간접지급금액 배분 (USD)
00000-25-000001M	MODULE A	10,000	1%	100
00000-25-000002M	MODULE B	20,000	2%	400

미흡 사례 3 가격신고서 상세 내용에 미작성하고 과세자료 누락

● 가격신고서 상세 내용 중 간접지급금액 해당 내역 → 미작성

A. 산출근거	12. (a) 송품장 화폐 단위로 표시된 거래가격(관세평가목적상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 (환율 : 1401.38 (USD))	10,000
	(b) 직접·간접지급금액, 할인(조건, 사정해당), 채무상계, 변제금액 등(원화)	
	13. 국내화폐로 환산한 총액(A)	14,700,000

● 판매자에게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나,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누락

- 당발송금종류 : T/T
- 송금 금액 : USD 3,000
- 송금 사유 : 36112 상계차액(무역과 무역)

아. ⑧ 특수관계자 거래

- ▶ 특수관계자 거래 :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 가격신고서 상 8. (a) 질문에 예로 체크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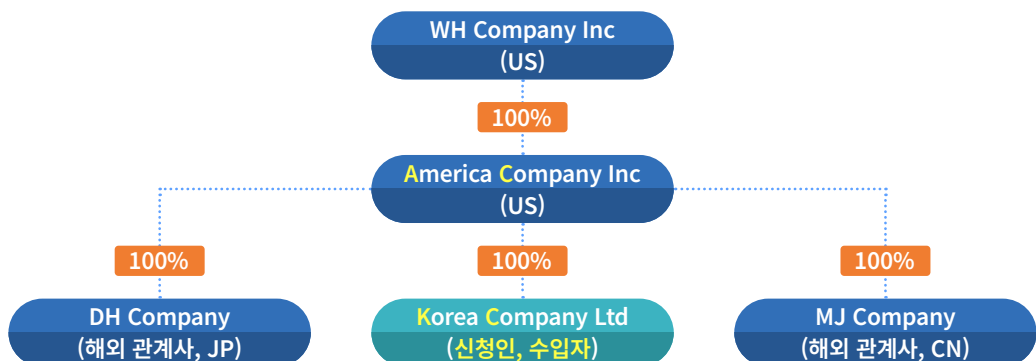
8. (a) [특수관계 해당여부] 구매자와 판매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중 특수 관계에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으면, (b), (c), (d)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예 ☐ 아니요
(c) [정상가격 산출방법]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수입물품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무엇입니까? ※ 필수 선택 ① 비교가능제3자가격법 ② 재판매가격법 ③ 원가가산법 ④ 거래순이익률법 ⑤ 이익분할법 ⑥ 기타 합리적인 방법	[① ~ ⑥ 택1]
(d) [수입가격 결정방법]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결정방법은 무엇입니까? ※ 필수 선택 ① 국내판매가격(표준판매가격·평균판매가격·순판매가격 등) × (1-할인율·재판매마진율) ② 국내판매가격(표준판매가격·평균판매가격·순판매가격 등) - 목표매출이익 (- 운임·관세 등) ③ 제조원가(표준원가·제3자구매가격 등) × (1 + Mark up율) ④ 제조원가(표준원가·제3자구매가격 등) × 계수 ⑤ 기 타 (상세 결정방법 입력)	[① ~ ⑤ 택1]

- 제출 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①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②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상세 설명, ③ 사후보상조정 여부

우수 사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설명이 모두 포함

■ 지분 현황 및 주요 수입물품 설명

- AC가 KC 설립 이후 현재까지 100% 소유하고 있음



- 주요 수입물품은 특수관계자인 AC로부터 수입하는 0000물품

구분	HS	주요 수입물품
1	0000.00-0000	0000
2	0000.00-0000	0000

■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결정방법

$$\text{수입가격} = \text{제조원가(표준원가)} \times \text{Mark-up율}$$

- **(제조원가)** 과거 발생 비용(전년도 각 제품의 생산에 소요된 실제 비용 등)에 기초하여 산정

구성 요소	주요 내용	비중(%)
재료비	완제품의 BOM(Bill of Material)에 기재된 항목 및 수량에 대해 해당 항목의 공급자에게 지불되는 현재 가격에 기초하여 계산	60%
관세	원재료 구매가격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는데, 해당 비율은 총 구매가격 대비 총 납부 관세의 비율에 기초하여 매년 계산	10%
외주 작업비	외주 작업으로 인해 부가된 가치 역시 표준원가에 가산(철강부품을 외주 작업자에게 보내 도급작업을 하는 경우 등)	20%
이외 제조비용	이외 제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으로서 모든 직접·간접노무비 등 인건비, 감가상각비, 제품 생산과 관련된 소모품비 등을 포함. 해당 비용들은 일정 배부기준(노동시간, 기계 가동시간 등)에 따라 배부. 다만, 판매, 관리 활동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10%

- **(Mark-up)** 해외공급 국가별 Mark-up율 매년 일정하며, 목표 영업이익률 달성을 위해 70% 고정하고 있음

- **(목표 영업이익률)** TP-study 결과 정상가격 범위를 토대로 4.5%

제품군	정상가격 범위	목표 영업이익률
전 제품군	3% ~ 6%, 중위값 4.5%	4.5%

- 사후보상조정 내역(최근 3년)

(단위 : USD)

특수관계자	2024년	2023년	2022년
America Company Inc(US)	10,000	80,000	90,000

※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특수관계 거래 시 특수관계 거래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필요

미흡 사례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산식)만 있고 설명이 없음

- 한국법인 000코리아는 해외지사로부터 완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시장에 재판매하는 유통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정상가격 산출방법 : 거래순이익률법(TNMM)
-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고 있음
 - ➡ 수입가격 = 표준원가 × (1+Mark-up 15%)

미흡 사례 2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산식) 및 설명 부족

- 정상가격 결정방법
 - 당사는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는 재화를 국내에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상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인 거래순이익률법을 채택하고 있음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 개별 수입물품의 가격 결정은 제3자에게 판매하는 가격 범위를 기준으로, 평균 할인을 차감하고, 당사가 판매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이윤과 목표마진을 차감하여 결정 이때 목표 마진은 정상적인 영업이익 달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준으로 설정

미흡 사례 3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설명과 무관한 자료 제출

- 가격신고서 작성 : 신고서 항목 8. (a)에 “예”라고 체크하여 제출
- 가격신고 시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특수관계자 거래) : 해당 업체의 재무제표만 제출

미흡 사례 4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수입하나 과세자료를 한 번만 제출

- 가격신고서 작성 : 신고서 항목 8. (a)에 “예”라고 체크하여 제출
- 가격신고 시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특수관계자 거래) : 여러 공급자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나 최초 공급자로부터 수입할 때만 이전가격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다른 공급자로부터 수입 시 가격신고서에 과세자료를 제출한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입